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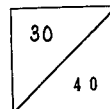
| 의안번호 | 회의차수 | 회의일자         | 제 의 자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8   | 14   | 1994. 6. 16. | 종재 김 영 호 |

의안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훈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훈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

제의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을 완화하고자  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제

한국은행법 제7조

- ( 생      략 )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 생      략 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 생      략 )

< 별첨 >

「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만기 : 91일 이상 270일 이내(중도해지 불가능), 다만,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270일 이내로 함   | 2. 만기 : 60일 이상 270일 이내(중도해지 불가능), 다만,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270일 이내로 함   |
| 3.~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~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기타 :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과 91일 미만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 | 7. 기타 :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과 60일 미만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 |
| 8. 실시일자 : 1993. 9. 3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 실시일자 : 1994. 7. 18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